



경 상 남 도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관원 질의 회신(이행강제금 부과 특례 관련)

1.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-6873호(2020.8.20.) 및 사천시 건축과-39041호(2020.7.17.)와 관련 문서입니다.

2. 질의요지

- 「건축법」 제80조의2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를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의 시점은 언제인지?
 - * 사천시 건축조례 제40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“최초 이행강제금 부과일부터 2년”

3. 답변내용

-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르면 축사 등 농업·어업용 시설로서 50제곱미터(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) 이하인 경우는 이행강제금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하고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하되,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경 특례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,

-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후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감경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국토부 공문 1부. 끝.

경 상 남 도 지 사

수신자 사천시장(건축과장), 창원시장(건축경관과장), 진주시장(건축과장), 통영시장(건축과장), 김해시장(건축과장), 밀양시장(건축과장), 거제시장(건축과장), 양산시장(건축과장), 의령군수(도시재생과장), 함안군수(도시건축과장), 창녕군수(도시건축과장), 고성군수(건축개발과장), 남해군수(도시건축과장), 하동군수(도시건축과장), 산청군수(도시교통과장), 함양군수(민원봉사과장), 거창군수(도시건축과장), 합천군수(도시건축과장)

주무관 **한옥임** 건축관리담당 **차종열** 건축주택과장 **최진희** 전결 2020. 8. 20.

협조자

시행 건축주택과-15143 (2020. 8. 20.) 접수

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, 경상남도청 (사림동) / <http://gyeongnam.go.kr>

전화번호 055-211-4324 팩스번호 055-211-4319 / hanok4000@korea.kr / 대한민국 공개

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온라인으로 문서제출 "문서24"